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재가단2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68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재가단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울

담당변호사 최철순

피고(재심원고) C

변론종결 2024. 8. 27.

판결선고 2024. 9. 24.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7193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70.4㎡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 지상 목조초층 평가건본가를 철거하고, 위 L 부분 대지 2.7㎡를 인도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3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20. 6.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21. 9. 28.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937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10.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8744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23다299802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